

第 78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 ' 97. 8. 12. ~ 8. 16.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中國科學院植物所

# 本會競選會

(1958~1959)

北京植物所委員會



# 목 차

1997 • 8 • 통권 제54호

I.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3
II.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1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	19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1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3
4. 교육기관 방문의 건 .....	27
5.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9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8월 12일 (화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교육기관 방문의 건
5.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교육기관 방문의 건(이기수위원 외 3인 위원 발의)
6.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사회 의사과장 이흥무)

(11시 00분 개회)

● 의사과장 이흥무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78회-제1차]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02분 개의)

●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조일환

부의장 조일환입니다.

개회에 앞서서 오늘 의장님께서 제주도에 서 개최되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 참석차, 부족한 이 사람이 오늘 제78회 임시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하나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협조해 주셔서 본 회의가 원만히 이끌어 질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흥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8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7-7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제7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이 7월 19일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어 8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금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이기수 위원 외 3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교육기관방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장님께서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출석하시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5분)

● 부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드린 바와 같이 제7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월 16일까지 5일간으로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위원 발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교육기관 방문을 위하여, 15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12분)

● 부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동일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끈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9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6,906억 1,400만원이고 세출은 6,218억 2,200만원으로서 687억 9,200만원의 세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56억 5,8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3,400만원으로

[제78회-제1차]

서 '97년도 예산 재원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6,906억 5,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6,906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5.3%인 1,060억 7,1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4.7%인 5,845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천억 4,300만원으로서 88.8%인 6,218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6억 5,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25억 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3,108억 7,700만원, 물건비 1,364억 2,800만원, 경상이전비 771억 800만원, 자본지출경비 974억 900만원으로 총 6,218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현황은 총 456억 5,800만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중 충북예술고 이전사업비등 291억 5,1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165억 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96년도 채권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중심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비로 228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

여 '97년 3월 1일 개교한 상당고등학교외 3개교 신설에 195억 2,500만원,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외 2개교 이전사업에 28억 5,700만원을 투자하였고, 부족교실 증축 54억 9,500만원, 기존시설확충 41억 1,1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54억 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실의 현대화 및 교단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 교실마다 최첨단 교재·교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교단선진화 사업에 공립학교 59억 4,000만원, 사립학교 6억 9,200만원등 66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원어민 영어교사 24명을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생활외국어 교육에 6억 5,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유아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유치원사 신축에 17억 7,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에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381억 300만원, 시설비 38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정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확충시설 30억 600만원, 실습실 확충 30억 7,800만원, 멀티미디어실 설치 21억 6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실험실습비 10억 6,400만원, 장학금 3억 3,500만원, 컴퓨터교육비 4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 도모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초등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급식학교시설비 26억 6,400만원, 급식학교운영비 51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총 5,461명을 대상으로 각종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에 28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명예퇴직제 확대로 공·사립학교의 교직원 134명에게 51억 9,700만원의 퇴직수당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도 8개 지역교육청에 6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행정 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참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2  
(끝에 실음)
- ▶ 1996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1
- '96.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 별책2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서 : 별책3
- 1996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4

이어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손해배상금 9,199만 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5일 16시 30분경 보은중학교 유도장에서 동고 3학년 유도부주장 성백술이 같은 유도부 1학년 김창호에게 연습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청소함에 있는 걸레 자루로 구타하여 1994년 10월 19일 11시 27분경 청주한국병원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95년 10월 2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12만 7,860원을 배상토록 판결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바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측과 9,200만원에 합의, 부족금액 9,199만 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참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3  
(끝에 실음)

[ 제78회-제1차 ]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부의장 조일환

관리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은 오는 8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본도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교육기관 방문의 건

(11시 18분)

● 부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기수위원 외 3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이기수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인 외 세분의 위원께서 발의에 찬성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기간인 요즈음 학생들의 야영교육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학생야영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교육시설 현황 및 야영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야영장에 입소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야영훈련 중인 학생들과 학생지도에 수고하고 있는 지도교사 및 직원들을 격려하느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기간은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으로 첫째 날인 8월 13일에는 진천군 문백면 소재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을 방문하고, 둘째 날인 8월 14일에는 괴산군 청천면 소재 청천학생야영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 외 3인 위원이 공동발의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4

(끝에 실음)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부의장 조일환

이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기간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소위원회

(11시 20분)

● 부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김정길, 조일환, 김광수, 안병일, 이경운,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22분)

● 부의장 조일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광수, 그리고 이근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광수, 이근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 산회 후부터는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교육기관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제78회-제1차]

0 출석위원 : 10명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흥목,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별첨2
-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3
- ▶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4

※ 별 책 부 록

- ▶ 1996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1
- ▶ '96.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 별책2
-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 별책3
- ▶ 1996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별책4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8월 16일 (토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기타안건 처리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경과보고

### ● 의사과장 이흥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해 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로부터 동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들으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03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김광수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8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2일 금번 회기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연 3일간 3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을 총괄하여 보면은 '95회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7천억 4,320만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6,906억 1,424만원과 6,218억 2,196만 2천원으로 687억 9,227만 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세입, 세출, 이월비, 예비비, 재산, 금고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6,906억 5,067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906억 1,424만원이 수납되고 3,643만 6천원이 불납결손 처리됨으로써 예산액 대비 104.6%,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본 바, 의존수입이 5,845억 4,349만 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84.6%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은 1,060억 7,074만 8천원으로 15.3%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의존수입이 점하는 비율이 1.0% 감소된 것으로 재정자립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218억 2,196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9%가 집행되었으며, 다음 연도로의 이월액은 456억 5,806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5%정도이며, 불용액은 325억 6,317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입니다.

지출액을 관별로 세분하여 전년도와 점유율을 비교한 바, 학교비와 사학지원비가 각각 0.8% 증가한 반면 시설비는 1.5%가 감소되었으며, 기타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월액은 교육행정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중 시설비가 97.5%로 거의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총불용비율이 4.6%로 '94년도에 3.4%, 전년도에 2.7%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교육행정비중 인건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비는 22.4% 증가한 반면 교육위원회비는 0.2%, 교육사업비는 3.7%, 학교비는 4.1%, 사학지원비는 3.6%, 시설비는 3.3%, 예비비는 7.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이월비 결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명시이월 71건에 291억 5,106만 3천원, 사고이월 44건에 165억 700만 2천원, 총 115건에 456억 5,806만 5천원으로 이를 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본청이 26건에 254억 7,724만 5천원이고, 지역교육청이 89건에 202억 1,082만원으로 총 이월액에 대한 점유율은 각각 55.7%와 44.4%입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6년도 1월 20일 지출결정된 보은중학교 유도부 학생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합의 배상금 지급분 9,199만 9천원으로, 금회 안건으로 제출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6회계년도 중 채권, 채무액의 발생은 없었으며,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96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603억 524만 9천원이 증가된 1조 3,984억 5,001만 3천원인데 재산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신설교 토지매입, 교실 증·개축등 재산취득이 되었기 때문이며, 공유재산을 좀더 세분하여 보면 행정재산의 '95년도말 현재액은 1조 3,305억 899만 1천원으로 '96년도에 818억 1,193만 5천원이 증가되고 259억 8,537만 7천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 현재액은 1조 3,863억 3,554만 9천원이며, 잡종재산의 '95년도말 현재액은 76억 3,577만 3천원으로 '96년도에 112억 4,385만 1천원이 증가되고 67억 6,516만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 현재액은 121억 1,446만 4천원입니다.

다음 물품의 '96년도말 현재액은 7,450점에 378억 3,186만 9천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 3만 226점 462억 3,397만 4천원에 비하여 '96년도에 1,567점에 129억 1,471만원이 증가되고 중요물품 대상기준 변경에 따

[ 제78회-제2차 ]

라 24,343점 213억 1,681만 5천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6,906억 1,424만 1천원이고, 총 지출이 6,218억 2,196만 2천원이며, 차입잔액이 687억 9,227만 9천원으로, 차입잔액 모두가 결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와 같이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이월비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작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좀더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주민부담금 수입의 총 예산액이 666억 7,137만 4천원인데 결산액은 1,083억 3,94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세입징수율이 162.4%나 되어 예산편성 시에 세입재원 포착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집행중 총 22건 1억 1,590만 3천원의 유보액과 교원재교육관리비 2억 6,166만 9천원 등의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는 바,

이는 사업계획의변경, 법규의 폐지로 인하여 세출예산 유보액 또는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경정사업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세출예산을 효율성있게 운용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월사업비 115건에 456억 5,806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6.5%가량이나 되는 것은 사업시행의 유보, 설계변경, 공사발주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세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금년도에도 국가의 존수입의 결손이 예상되므로 사업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에 교육위원이 참여하여 보다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앞에서 적시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의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10여일 간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3일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의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96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본 소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5  
(끝에 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 소위원회 간사께서,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20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역시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조일환 위원 “제가 좀”하고 거수하여 발언신청)

조일환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 제78회-제2차 ]

본 건에 대해서 어떤 반대로론이나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청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러한 하나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안건을 제출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겸 제가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것은 합당하게 잘 처리가 됐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안건을 제출하는 사유나, 제안 사유나 골자 또 그 밑에 예비비 지출 사유 이것을 간략하게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료로는 본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해서 개별적으로 집행청의 관계관계 심려를 끼쳤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며는 이 내용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판결은 1억 약 1억으로 판결이 났고 피해자는 1억 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어떠한 피해자가 판결이 1억의 판결이 났는데 9,200, 소위 약 한 800만원의 손실을 입어가면서 어떻게 이게 합의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이유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두번째로 적어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개요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불가항력이었는가, 시일을 2일 남겨두고 감독교사가 충실하게 현장을 지도했겠는가 이러한 현장 상황에 대한 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이 '94년도에 사건이 난 현장방문을 해도 자료수집이 어려웠고 이러한 것은 집행청에 없고 소중한 기록으로 남겨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안건을 상정하실 때는 이러한 준비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중요한 국가적 손실을 입었을 때는 청구권을 행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의견을 제가 받아 본 연후에야 “아하, 청구권을 이래서 포기했구나” 하는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재판에서 판결된 소위 주문, 판결문을 저희들이 심의하기 이전에 첨부해서 주셨으면은 그 판결한 소위 법적인 이러한 판결문에 대한 판단, 또 현지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훨씬 용이했으리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대한 과실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 관련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어떻게 행정처리했느냐, 쉽게 말하면, 징계 처리한 적어도 회의록이나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주셨으면은 본 위원들이 심의

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게 심의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요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의안을 보다 위원들의 입장에서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뭐 하실 말씀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처리와 두곳의 학생야영장을 방문해 교육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야영활동 중인 학생들과 지도교사, 야영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교육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폐회)



[제78회-제2차]

0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별첨5

(별첨1)

# 議 事 日 程

第78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7.8.12~8.16.(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7.8.12(화) 10:00 11:0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b>[제1차 본회의 개의]</b> 1.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7. 8. 12 ~ 8. 16.(5일간)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4. 교육기관 방문의 건(제안설명) 5.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b>[제1차 본회의 산회]</b>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97.8.13.(수) ∫ 8.14.(목)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 8.13.(수) ~ 8.14.(목)  <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 방문 · 8. 13.(수) 10:00 ~ 충북학생종합야영장 · 8. 14.(목) 14:00 ~ 청천학생야영장	본회의 휴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7.8.15.(금)	공 휴 일	본회의 휴회
'97.8.16(토) 11:00	<p>[제2차 본회의 개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li> <li>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li> <li>3. 기타안건처리</li> </ol> <p>[제2차 본회의 산회]</p> <p>※ 폐 회</p>	



(별첨 2)

의안번호	제 78-1 호
의결 년 월 일	1997. 8. ( 제 회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8. / .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08-1
----------	-------

제출년월일 : 1997. 8.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 주요골자

'96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6,906억 1천 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6,218억 2천 2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56억 5천 8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31억 3천 4백만원으로서 총 687억 9천 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따로 붙임

□ 참고사항 : 따로 붙임

- '9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96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작성 지침

(별첨 3)

의안번호	제 78-2 호
의결 년 월 일	1997. 8 . ( 제 회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8 . / .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78-2
----------	------

제출년월일 : 1997. 8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안이유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 주요골자

- 지출건수 : 1건
- 지출결정액 : 91,999,000원
- 지 출 액 : 91,999,000원
- 잔 액 : 없 음
- 지출사유 : 보은중학교 유도부 학생 사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합의금 지급

### □ 예비비지출내역

(단위:천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합의금	'96. 1.20	91,999	91,999	0

### □ 예비비사용명세서 : 별 첨



# '96. 예비비 사용 명세서

(단위:천원)

과 목						예비비 지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잔액	예비비사용내역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본청	교 육	교육행	행정관	기관운	배상금	91,999	91,999	0	보은중학교 유 도부 학생 사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합의 배상 금 지급
	행정비	정기관	리담당	영 비					
		운영비	관실운	영 비					
계						91,999	91,999	0	

예비비 지출 사유

○ 사건개요

1994. 10. 5. 16:30분경 보은중학교 유도장에서 3학년 유도부 주장 성백술이 같은 유도부 1학년 김창호에게 연습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청소함에 있던 마포자루로 구타하여 우측 전두부 뇌경막하혈증등으로 1994. 10.19. 11:27분경 한국병원에서 뇌경색증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고임

○ 1994. 11. 25.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액 111,032,674원

○ 청주지방법원 판결 손해배상액 100,127,860원 (94가합6250호, 95.12.27)

○ 1996. 1.19. 원고측과 92,000,000원에 합의

○ 1996. 1.20. 합의금 부족액 91,999,000원 예비비지출 결정

※ 본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피고인(가해자) 성백술은 대전고법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음.



(별첨4)

## 교육기관 방문의 건

의 안 번호	제 78- 호
-----------	---------

발의년월일 : 1997 년 8 월 4 일

발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 외 3인

### 1. 주 문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 중 학생야영장을 다음과 같이 방문한다.

가. 방문기간 : 1997. 8.13.(수)~ 8.14.(목) / 2일간

나. 대상기관 : 2 개 기관

- 충북학생종합야영장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
- 청천학생야영장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소재)

다. 방문일정 : 붙임 참조

### 2. 이 유

가. 학생야영장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나. 훈련학생 및 교직원 격려

다.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자료 수집

## 교육기관 방문일정

년 월 일	시 간 별	내 용
'97.8.13(수)	10:00	0 교육위원회 출발
	11:00	0 충북학생종합야영장 도착(방문활동)
	12:00	0 충북학생종합야영장 출발
	12:30	0 오 찬
	14:00	0 교육위원회로 출발
	15:00	0 교육위원회 도착, 해산
'97.8.14(목)	14:00	0 교육위원회 출발
	15:00	0 청천학생야영장 도착(방문활동)
	16:00	0 청천학생야영장 출발
	17:00	0 교육위원회 도착, 해산



(별첨 5)  
(제78회 임시회)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997. 8. 1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8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7년 8월 12일
- 다. 상정일자 : 1997년 8월 12일 제7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소위원회(1997년 8월 12일)
  - 제2차 소위원회(1997년 8월 13일)
  - 제3차 소위원회(1997년 8월 14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96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6,906억 1천 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6,218억 2천 2백만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456억 5,806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3,421만 4천원으로서 총 687억 9,227만 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청취(보고자 : 재무과장 이기수)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6. 심사보고 주요내용

###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659,983,424	700,043,200	690,614,240	621,821,962	68,792,278

- '9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00,043,200천원('95. 이월사업비 40,059,776천원 포함) 이며,
- 세입결산액은 690,614,240천원으로 예산액대비 104.6%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621,821,96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9%를 집행하였고,
- 세계잉여금이 68,792,278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45,658,064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23,134,214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23,134,214천원
  - 명시이월사업비 : 29,151,063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16,507,001천원

###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징수율	징수결정액대 비징수율
659,983,424	690,650,676	690,614,240	36,436	0	104.6%	99.99%

- '96.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690,650,67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90,614,240천원이 수납되고 36,436천원이 불납결손 처리됨으로써 예산액대비 104.6%,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584,543,492천원(84.6%)
  - 자체수입 106,070,748천원(15.3%) 으로,
 전년도 대비 의존수입비율이 1% 감소하였지만 재정자립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불용율
659,983,424	40,059,776	700,043,200	621,821,962	45,658,065	32,563,173	88.8%	4.6%

'96.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21,821,96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8.9%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5,658,06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5%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32,563,17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6%인데,

○ 지출액 621,821,962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교육위원회비 709,520천원(0.1%)
- 교육행정비 435,640,814천원(70.1%)
- 교육사업비 5,385,410천원(0.8%)
- 학 교 비 46,392,382천원(7.5%)
- 사학지원비 42,685,321천원(6.9%)
- 시 설 비 91,008,515천원(14.6%)으로

전년도 대비 관별 점유율은 학교비가 0.8%, 사학지원비가 0.8% 증가한 반면 시설비는 1.5%가 감소되었으며, 기타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임.

○ 다음년도 이월액 45,658,065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행정비 58,198천원(0.1%)
- 학 교 비 478,570천원(1.1%)
- 사학지원비 607,750천원(1.3%)
- 시 설 비 44,513,547천원(97.5%)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 불용액 32,563,173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위원회비 27,655천원(0.1%)
- 교육행정비 14,898,021천원(45.8%)
- 교육사업비 384,307천원(1.2%)
- 학 교 비 909,159천원(2.8%)
- 사학지원비 1,411,392천원(4.3%)
- 시 설 비 5,831,757천원(17.9%)



- 제지출경비 3천원(0.0%)
  - 예 비 비 9,100,879천원(27.9%)으로서
- 예산현액에 대한 총불용비율이 4.6%로 '94년도에 3.4%, 전년도 2.7%에 비해 다소 높아 졌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교육행정비(인건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행정비는 22.4% 증가한 반면 교육위원회비는 0.2%, 교육사업비는 3.7%, 학교비는 4.1%, 사학지원비는 3.6%, 시설비는 3.3%, 예비비는 7.5% 감소하였음.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1	29,151,063	44	16,507,002	115	45,658,065	

'96. 이월비는 명시이월 71건에 29,151,063천원, 사고이월 44건에 16,507,002천원, 총 45,658,065천원으로, 그 기관별 내용은,

- 본 청 26건 25,477,245천원(55.7%)
- 지역교육청 89건 20,210,820천원(44.3%)임.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비 지출 결정액	예비비 지출액	비 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합의 배상금 지급	91,999	91,999	지출결정 : '96. 1. 20.

위 건의 예비비 지출은 '94.10.19.보은중학교 유도부학생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합의 배상금 지급액으로 금회 제7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 권 : 해당사항 없음.
-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사. 재산의 결산

-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95년도말 현재액	'96년도 증 감		'96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	감		
합 계	1,338,144,764	93,055,786	32,750,537	1,398,450,013	
행정재산	1,330,508,991	81,811,935	25,985,377	1,386,335,549	
잡종재산	7,635,773	11,243,851	6,765,160	12,114,464	

공유재산의 '96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60,305,249천원이 증가된 1,398,450,013천원인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5년도말 현재액은 1,330,508,991천원으로 '96년도에 81,811,935천원이 증가되고 25,985,377천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의 현재액은 1,386,335,549천원이고,
- 잡종재산의 '95년도말 현재액은 7,635,773천원으로, '96년도에 11,243,851천원이 증가되고 6,765,160천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 현재액은 12,114,464천원임.

- 물 품

(단위 : 천원)

'95년도말 현재액		'96년도 증 감				'96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30,226	46,233,974	1,567	12,914,710	24,343	21,316,815	7,450	37,831,869

물품의 '96년도말 현재액은 7,450점에 37,831,869천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 30,226점 46,233,974천원에 비하여 '96년도에 1,567점 12,914,710천원이 증가되고 중요물품 대상기준 변경에 따라 24,343점 21,316,815천원이 감소되었음.

##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총 수입	총 지출	차인잔액	비 고
690,614,241	621,821,962	68,792,279	○ 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68,792,279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96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690,614,241천원이고, 총 지출이 621,821,962천원이며, 차인잔액이 68,792,279천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산 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함.

##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이월비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및수업료수입, 사용료및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주민(기관등)부담금수입의 총예산액이 66,671,374천원인데, 결산액은 108,339,450천원으로 예산액대비 세입징수율이 162.4%나 되어 세입재원 포착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 세출예산 집행중 총 22건 115,903천원의 유보액과 교원재교육관리비 261,669천원 등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는 바,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 법규의 폐지로 인하여 세출예산 유보액 또는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경정·사업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세출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 이월사업이 115건에 45,658,06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5%정도나 되는 것은 사업시행의 유보, 계획변경, 공사발주의 지연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세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 금년에도 국가의존수입(지방교육양여금 등)의 결손이 예상되므로 세출예산집행에 있어 사업우선순위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회에 교육위원이 참여하여 보다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1997. 8. 16.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 경 윤

간사 김 광 수

위원 김 정 길

“ 조 일 환

“ 안 병 일



第 78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 '97. 8. 12. ~ 8. 14.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務報告及活動紀實

# 義蓬會 會員委小集先賓遊

(2014年11月)

會員委小集先賓遊



# 목

# 차

I.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3
II.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7
III. 제7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37
IV.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2. 답변서	
3. 교원재교육관리비 불용액 발생에 대한 답변서	
4.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5.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8월 12일 (화요일) 13시 07분

## 議事日程 (제7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3시 07분 개회)

### ●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우리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09분)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선출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구두호천

[제78회-제1차 예·결산소위원회]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하는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안병일위원님.

● 안병일 위원

이경윤위원님이 맡았으면 하고 추천를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예, 안병일위원님께서 이경윤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우리 조위원님 어떻습니까?

● 조일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그럼 세분이 추천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절대다수가 이경윤 위원님을 예결산위원장님으로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 이의없이 당선되신 것으로서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임시 위원장인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선임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이경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제가 이 일을 원만히 진행할까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금번 소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조그만 성의를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견

(13시 12분)

이어서 간사선임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에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



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네, 김광수위원님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네, 위원장님.

간사는 누구를 추천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사를 자임을 할까싶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 조일환 위원

동의합니다.

● 안병일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희생적으로 일을 맡겠다고 하는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승낙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언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목례)

● 간사 김광수

예, 위원장님 뜻을 받들고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간사직을 충실히 이행하겠음을 여러분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3시 14분)

다음은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날짜별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8월 13일 10시로 되어있는데 14일날 2시는 괜찮은데 10시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11시쯤 하셔서 오후에 늦게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시간쯤 늦추시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 안병일 위원

그것도 좋지요. 그렇게 양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제가 제안한 일정과 시간에 대하여 조위

[제78회-제1차 예·결산소위원회]

<p>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별의의가 없으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승낙해 주신걸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조위원이 수정하여 제안한대로 의결이 되었</p>	<p>음을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2차소위원회에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을 다루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침과 아울러 산회를 선언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13시 17분 산회)</span></p>
---	--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경윤, 간사 김광수, 위원 김정길, 조일환, 안병일.

0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별첨1)

#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8월 13일 (수요일) 11시 05분

## 議事日程 (제7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附議된 案件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05분 개회)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 위원장 이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 개요설명과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끝에 실음)

### ● 위원장 이경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김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길 위원

김정길입니다.

본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심의할 수 없는 총체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첫째,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며, 둘째는 다음 년도 예산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서는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검토한 바로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항목별 심의과정에서 관계관계 몇 가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교육예산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수입은 5% 정도밖에 불가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예산은

수립과 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결산서를 검토·분석해 본 바로는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5년보다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크게 팽창한 반면에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에 대한 자본지출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충북교육의 실태를 보면 산하공무원은 모두 14,072명으로 '95년도 보다 2명이 줄었고 학급수는 7,808개 학급으로 '95학년도 보다 121개 학급이 줄었습니다. 학생수는 284,497명으로 '95년도 보다 5,507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산은 6,218억원으로 '95년도 보다 15.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크게 팽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질별 예산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6.3%가 증가한데 비해서 여비, 관서운영비, 학교비 등 물건비가 무려 51.2%나 늘어났고, 사학지원비 등 경상이전지출이 34.3%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교육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자본지출은 오히려 1.6%나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물건비중에 관서당경비 및 운영비, 여비는 낭비적요소와 소모성 성격이 많은 분야로써 학생수·학급수·공무원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서당경비 및 운영비가 55.6%나 늘어났고 여비는 68.9%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5년도에는 16.7%정도인 것이 '96년도에는 21.9%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323억 6,6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절감 목적으로는 단한푼도 불용액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비는 의지만 있다면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지출을 줄이면서까지 물건비를 다른 분야보다 크게 팽창시켜 집행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교육청의 예산절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물품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정된 결산서에 보면은 '96년도말 현재 물품재고는 7,4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378억 3,1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95년말 현재 3만 226건에 462억 3,300여만원보다 물품 건수로는 75.4%, 금액으로는 18.2%가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물품이 '96년도에 크게 줄어든 이유로는 신규구입보다는 매각·폐기·전환 등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6년도에 2만 4,343건,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13억 1,600만원어치의 물품을 처분하면서 매각수입이 물품가격의 불과 0.4%에 해당하는

7,0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품을 모두 매각한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불용물품이라 할지라도 213억원어치를 처분하면서 매각수입이 7,00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불용물품을 처분하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부분의 답변을 듣고 개별 몇가지 사항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리하고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 김정길 위원

예, 지금 총괄적인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부분별 몇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해주실 수 있으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위원장 이경윤

그럼 김정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집행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국장님께서 해주시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제가 답변을 드리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자본지출을 줄이면서까지 물건비를 다른 분야보다 크게 팽창해서 집행한 이유는 뭐냐, 또 충북교육청의 예산절감 의지가 확고하게 서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건비의 인상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25%가 인상이 되어서 그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지출이 됐고, 또 연수인원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여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교육비는 교당·급당 경비를 저희들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증액분으로 인해서 인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건비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지출 감액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신설경비로 '95년도에는 6개교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96년도에는 3개교만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약 5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시설 완료로 해서 27억원

및 학교 급식시설사업 잔여학교 감소로 약 43억원이 감소되는 등 주된 사업으로 총 121억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요인은 대상사업의 확대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지출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소모성 경비를 지금 10%절감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지는 저희들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금년말에 가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집행청의 답변이 끝났는데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길 위원**

예, 그러면은 전반적인 총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됐고, 제가 부분별로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9쪽에 보면 학업중도포기학생 선도학교설립지원비라고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은 내무부에서 전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답변을 드리지요.

이 2억원은 내무부, 지금 말씀하신 내무부지원금으로 '96년 12월 30일에 내무부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중도포기 학생을 수용할 학교를 지금 저희 산하 학교법인에서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지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문지상에도 여러번 이 문제 때문에 게재된 것을 여러 위원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지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고자 하는 그 학원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절차상 학교설립계획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정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말이죠. 제일 마지막줄 입니다. 23쪽에 사학지원비로 426억 8,5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금액은 '95년도보다 무려 29%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사학지원비로 말이죠. '96년도 결산액 증가율이 15.4%인데 비하면 사학지원비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

다. 사학지원비를 확대 집행한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관리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가 '95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것은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이 인건비도 16%를 인상을 했고, 교당경비도 58% 인상을 해주고 급당경비도 26%인상을 공립학교와 똑같이 해주는 관계로 사학지원비가 증가된 것도 있고, 또한 사학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도 공립학교에 준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학지원비도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이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된 내용입니다.

● 김정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40쪽을 보시면은요, 위에서 네 번째줄에요, 4번 국고지원금있지요.

국고지원금으로 54억 5,522만 3,240원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72억 4,196만 5,860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95년도보다 17억 8,600여만원이나 국고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그 또한, 그 징수결정금액에서 보면 278만 2,76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 위원장 이경윤

재무과장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지원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관·항·세항에서 국고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국고보조를 저희들한테 보조할 때에는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24건에 72억 4,196만 5,800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는데 '96년도에는 건수는 21건에 54억 5,522만 3,2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금은 교육부에서 특수시책에 대한 목적을 정할 적에 '95년도에는 어떤걸 정하고, '96년도에는 어떤걸 정하고 하는 것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마다 시책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95년도보다 '96년도엔 저희가 17억 8,600만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금 집행을 하다가 278만 2천원이 미수납 된게 어떻게 됐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은 집행하고 잔액이 있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남겨서 쓰고 그럴수가 없습니다.

반납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가 114만 3천원, 그리고 학교운동경기부 지원비로 보조되었던것 중에서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고, 독학학위취득시험경비가 163만 6천원, 그래서 세가지를 합쳐가지고 278만 2천원은 수납이 될 된게 아니고 반납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질문하신 중에서 물품제고가 어찌 이리 적었느냐 하는 그 차액은 아까 제가 개요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이 물품제고를 기준하는 기준금액이 '95년도 말에는 50만원 이상짜리 물품을 결산서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그 기준액이 200만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짜리 이상을 하다보니까 종수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들게 된 것이 물품이 준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매각처분하거나 폐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7천만원 밖에 어찌 안되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은 한 200억정도가 감소됐지만은 그것은 작성기준상에 감소지 실질감소는 거의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은 저희들이 불용품을 매각한 불용품 매각대금이 7천만원 수입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김정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을 보시면은 사용료수입항



목중에 말이죠. 도서관 사용료수입이 있어서 당초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셨죠?

● 재무과장 이기수

예.

● 김정길 위원

당초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그 항목인데 그 밑에 보면 도서관사용료수입 밑에 입장료수입 그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수입이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을 사용한 수입란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작년도에 '95년도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동장을 개방을 안했는지, 수입이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이것 두가지만 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이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용료수입을 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는 '95년도까지는 도서관에서 복사기를 가지고 복사를 해주면서 복사료를 받았습니 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서관에 오는 분들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실비를 받다보니까 그것이 인건비나 사무용품비도 안되기 때문에 복사를 안해주고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입니다.

● 김정길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는 복사수입 밖에 없습니까, 다른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기수

예, 복사수입 말고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길 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사용료는 어떻게 .....

● 재무과장 이기수

예, '95년도에는 예산 과목에 운동장사용료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96년도 예산지침이 바뀌면서 운동장사용료수입이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또 재경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장사용료수입은 기타사용료수입 과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사용료는 지금 거의 무료개방하고 해서 없습니다만 극히 사용료가 있더라도 기타사용료수입 과목으로다가 통합이 되어 기타사용료수입 과목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

● 위원장 이경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뭘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당수입관계는 어떻게 .....

각 지방마다 체육관이 전부있죠.

● 재무과장 이기수

그것도 수입이 있으면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정길 위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계속비 결산보고서라 해가지고 205쪽에 보시면 계속비 결산보고서 있죠. 두번째에 거기에 보시면 과학교육원이전사업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과학교육원이전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96년도에 시설비로 8,662만 4천원하고 시설부대비로 472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공식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는데 그 집행내역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것 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과학교육원이전사업의 기공식은 내일인데 어째서 미리 집행되는 내역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 김정길 위원

그렇죠. 예, 예.

● 재무과장 이기수

'96년도에 과학교육원이전사업비 집행은 총 1억 9,934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전사업을 하려하면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작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로다가 선급금을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0%정도 주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된 1억 8백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고, 8,662만 4천원은 구 교동학교에 건물

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 철거비용으로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7만 2천원은 설계공모를 하려고하면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공고료가 47만 2천원나갔고, 그리고 애초에 설계공모를 할 적에 심사위원 수당하고 경비로 374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진지인 좋은 과학교육원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 기술진들이 몇명 일본에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일본갔다온 여비로다가 32만 2천원이 집행되고 해서 총 1억 9,934만 6천원이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3쪽에 보시면은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년 년도말 현재액보고서가 좀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습디다. 결산서보고내용이 물론 자세하기는 합디다만 이 보고서는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구분을 해가지고 한눈에 잡종재산하고 보존재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길 위원

예, 그 다음에 같은 쪽 제일 밑에 보면 무채재산 있죠.

그 기계기구 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기계나 기구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또 만약에 없다면 재산이 없더라도 항목은 존치를 해야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재무과장 이기수

예, 그 기계기구를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전에는 기계기구를 재산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제작년에서부터 기계기구는 재산보다는 물품으로다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기업회계를 경영하는 데서는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기계기구를 재산으로 평가해서 기록을 하는데 저희들은 물품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기구가 실업계고등학교나 어디나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거엔 재산으로 분류돼서 넣다가 저희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빼놓았습니다.

● 김정길 위원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현황 5쪽이 되겠네요.

일반현황 5페이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일반현황 부속서류.

● 김정길 위원

예, 부속서류.

부속서류 일반현황에 보시면 교육위원회 세입이 잡혀있어요. 교육위원회 세입이 잡혀있는데 교육위원회 세입이 무슨 세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다시한번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 김정길 위원

예, 일반현황 제일 위쪽에 보면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세입 부분에 세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게 어떤 세입인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기수

예, 그것은 자동차를 매각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교체하면 매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 차를 바꾼 것입니다.

● 김정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요. 밑에서 세번째줄에 기타 3교 해놓고 세입은 있는데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이경윤

누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예, 예.

● 위원장 이경윤

재무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이것은 그 교원대 부속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리고 충북대 부속중·고등학교에 나간 경비보다 해서 인건비는 그쪽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답변서 (끝에 실음)

● 김정길 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말이죠.

44쪽에 보시면 중식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번재줄예요. 중식지원비인데 이게 어떻게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지금 중식비가 국비보조하고 자체부담금하고 포함해서 1억 7,407만 8천원의 예산이 썼는데 불용액이 372만 3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 중식관계 때문에 범도민적으로 모금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3백만원이 남는 돈이라는게 그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 재무과장 이기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 학생수를 예정학생수로 하기 때문에 실제하고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정도 차이는 납니다.

● 김정길 위원

물론 있겠죠. 있겠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예산확정 전에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예산 1억 7천가지고도 안되거든요. 우리가 해결하려면 3억 몇천인가 4억 몇천은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되더라도 이런것은 집행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정길 위원

그래서 그것이 나머지를 학생수에 비례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불용처리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예.

● 김정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운

네, 김정길위원의 자세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계속 질문을 더 할까요, 그냥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 조일환 위원

12시도 됐는데 휴회도 하고 중식을 하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어떨까요?

● 위원장 이경운

예, 조일환위원께서 잠시 휴식겸 오후에



다음 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하는 이런 말씀이 들어왔는데요.

어떠세요. 위원님들?

● 김정길 위원

그런데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오후에 식사하시고 하고 간단하면 그냥 계속 해가지고 마치고 .....

● 조일환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것들도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을 하면 중간에서 끝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지금 12시가 됐으니까 중식을 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운

네, 알겠습니다.

김정길위원의 약 한 50분간에 걸친 질문에 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1,20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휴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병일 위원

몇시에 속개를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운

예, 2시부터 오후 속개를 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이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지금 시기적으로 점심들 막 잡수시고 자칫 제 본의와 좀 다르게 너무 지나친 질문이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화도 잘 안됐을 것 같고 또 제출해주신 서류를 보니까 휴가도 모두 못하신 것 같고 충북교육을 걱정하는 한사람으로서 참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산에 대해서 검토는 했지만 상당히 식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을 가지고 제나름대로 질문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질문에 어떤 근접한 그러한 성질이 아닌 것도 혹시 있을 사유됩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정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결산 검사위원에 보면 도의원 두분, 그리고 전문

경험자, 고루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 분들이 몇번이나 결산감사에 참여를 했는가, 또 조금 추가로 더 부언을 드린다면은 이 결산감사를 그렇게 오래도록 같이 하신 분들의 결산감사를 저희가 질문한다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위해서 앞으로 교육위원의 한 사람이 이 결산감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도있는 이러한 결산감사를 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쪽의 첫째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지침을 제 나름대로 봤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그러하듯이 아마 예산의 집행지침에 의해서 하셨을 줄로 압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아직도 우리 본청에서 지침이 없는 것을 또는 지침이 애매한 것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것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윤

조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 조일환 위원

그 답변을 듣고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그럼 조일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 기준은 법령을 지금 저희들이 찾아와야 되니까.....

● 조일환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좋습니다.

다른 것만, 기준말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결산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도의원말고 네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몇번이나 이

결산감사에 참여를 하셨고 저희 교육위원들께서 한분이라도 그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처음부터 결산에 참여할 순 없겠는가 요거에 대한 답변만 좀 .....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조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위원회는 도의원이 두분, 공인회계사가 두분 그 다음에 옛날에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다루어 보았던 경력직 공무원 두분, 그래서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성기덕의원과 이길하의원이 이번에 처음 맡으셨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김창섭, 박효순위원도 이번에 처음 결산감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에 정찬헌위원은 2번을 맡으셨고,

이종선위원은 3번, 이번이 세번째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결산감사를 하셨습니다.

교육위원을 결산감사위원으로다가 위촉하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조금있다 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정확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까만 결산검사위원의 선정은 도의회에서 결정을 하기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교육위원이 결산검사위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전에 '95년도에는 저희 교육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다가 이번에는 안되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것을 강력하게 도의회 사무처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을 검사하는 그런 입장인데 교육위원님이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저희들이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타도에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된 사항을 알아보니까 도 교육위원회 위원이 위촉된데가 몇군데 안된다 경남 한군데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작년이후로 금년에는 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만 있건 없건간에 우리가 도 교육비특별회계를 결산검사를 하려면 도교육위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도의회에서 그분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국에서도 의사처리를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 아마 의장님에게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산위원에 도교육위원님들도 들어가는 것이 옳은게 아니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지정할 때 도의회 본회의에

서 지정이 됩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작년에도 빠지고 금년도에도 빠지고 그랬는데 교육위원님들을 위촉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촉을 하는 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그 다음에 제가 두번째 말씀드린 소위 예산의 편성이나 또는 지출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결산작성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반 사무감사와 달리 회계감사는 0.1수차가 퍼센테이지 하나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말은 바뀌서 말하면 반드시 지침에 준거한 예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서 저희들이 한수중학교, 송계초등학교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준 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

● 행정과장 이상찬

예.

● 조일환 위원

예, 그 예산은 어디에 근거를 했습니까?  
편성을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송계초등학교하고 한수중학교에 근거는 교육법시행령에 초·중학교 통·폐합계획이 법령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영세 초등학교와 영세 중학교는 둘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시·도교육감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계초등학교의 학생수나 한수중학교의 학생수가 개별적으로 분리해 봤을 때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의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교육부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한수중학교로 초등을 합칠거나, 또는 송계초등학교로 중학교를 합칠거나 하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위치상으로 장래 저희가 볼 때 초등학교 위치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더우기 초등학교의 건물은 개축대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중학교를 합치게 된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언을 말씀드리면 원칙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안으로 상정이 돼서 송계초등학교와 한수중학교가 합치는 것이 타당

하다 현장방문하고 됐다하는 의결 이후에 그 의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상정된 것을 본 위원이 심사할 때는 예결위의 다섯명이 한수중·초등학교 또는 기타 통·폐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그 통합이 과연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타당한가 아닌가 현장방문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두가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의결이 선이고 의결이 났으니까 건물도 다시 저야 되고 여러가지 거기에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아직도 초·중학교 통합이 되는 것이 가결인지 부결인지 미지수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통 어떠한 시점을 가지고서 절차상으로 심의를 사전에 한다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시기성이나 또는 완급을 따질 때에는 동시 의안으로 올라가는 것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 학교 통·폐합 자체가 모순이 있고 이 사업을 말하자면 인정을 할 수 없다하면 예산심사에서 삭감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는 모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지침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결이나 가결이냐는 그러니까 어느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했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증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의될 뿐이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의견이라면 그것이 그렇게도 급한가 또 한방에서 예산을 소위원회가 다루고 있고 또 한 위원들은 현장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부당하다 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세우지 않느냐 이것이 가결이 됐는지, 부결이 됐는지 미지수다. 가결이 되면은 통과가 되고 부결이 되면 통과가 안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는 확실한 지침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이 질문지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답변준비를 하셨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가 법정전입금과 주민부담금에 관한 건입니다.

이 쪽수로 보면 8쪽이 되겠는데요.

지방자치에서 전입되는 것이 1000분의 26 맞습니까,

타도에 비해서 충청북도만은 전입되는 것이 전액이 전입이 돼서 우리 교육재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충북의 교육행정력을 높이 평가하고 도와 교육청간에 유대깊은 그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작년도 모 도에서는 한푼도 전입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마춰 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타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대단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법정전입금과 주민부담금에 관한 것인데요. 주민부담금이 거기에 보면 2억 9,500만원 예산에 서있고 결산은 1억 4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결손이 약 1억 5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12쪽 될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 행정과장 이상찬

이 주민부담은 뭐냐하면은 괴산고등학교기숙사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괴산고등학교 기숙사시설비

가 국고로다 해서 7억 4천이 교부가 됐습니  
다.

이 7억 4천이 교부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인 괴산군수가 1억 5천을 지원하기로  
계획이 서서 저희가 정식 통보를 받아서 예  
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 7억 4천은  
교부 받았습시다만 괴산군수로 전입받을 1억  
5천만원은 즉, 내무부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  
시겠습니까만은 자치단체자체가 인건비를 충  
당할 수 없는 시·군은 다른 교육비나 다른  
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하는 그런 자체 예규  
가 있습니다. 괴산군수가 1억 5천만원 예산  
을 편성해서 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사로부터  
부결되어 저희한테 전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만, 괴산군청에서는 어떠한 방법  
으로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군에서 괴산고등  
학교에 지원하기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하나의 장학재단이라는  
법인체를 형성해서라도 주겠다하는 그러한  
언질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원  
으로는 인건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확실하게 공문상으로 받지도 않은 전입금  
을 여기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공문으로 받았습시다.

● 조일환 위원

아,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시겠습니까. 결손은 어  
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공문으로 받  
았어요?

● 행정과장 이상찬

예.

● 행정과장 이상찬

그것은 군수로부터 안줄 때는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것외에 군수에 대한 책임추궁은 없  
습니다.

● 조일환 위원

다른 조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보조  
인데 저희업체 것에 대해선 전액이 다 들어  
왔습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예.

● 조일환 위원

충북상고 야간부라든지 이런데 우리 산업  
체 다 들어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법령을 저희들이 찾았기 때문에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보면 감사위원  
의 선임이 있습니다. 제1항이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 시·군 및 자치  
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방의회의원은 감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도청에 이 조례로 재정된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결산감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제1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본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도의회 의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이 사전승낙을 받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3항 도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장은 선임위원회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도의장이 추천한 것을 도의회 전체에 의해서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 약 7천억원 이상이 교육위원회에서 1차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교육위원이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결산감사위원회에 과거처럼 위원이 참여해서 좀 심도있는 것을 심의를 하고 검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교원의 재교육관리비 불용액이 2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교원연수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또 기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2억 6천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초등교직과장 노현우입니다.

우선 교원 재교육은 부서가 여러군데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직과, 초·중등장학과, 과학기술과, 또 사체과, 단재교육원까지 7개 부서에서 전부다 연수를 끝마쳤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 8월 지출을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럼 8월경에 배정이 돼서 인원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연수지침 시달은 11월 중에 시달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연수인원, 확정적인 인원수는 그 이듬해 1월에 가서야 정확한 인원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확한 인원수로는 연수 인

원이 책정이 안됩니다. 금년 예산은 금년에 수용해서 할당을 해놓고 교원연수로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수인원 결정에 있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이 자격연수같은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됩니다.

교장 자격연수는 전년도에 35명을 신청했는데 27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엔 단재교육원, 교원대학교 연수등 교육에 대한 연수를 할 경우에 청주나 청원군에서 차출되는 일정단위 연수가 많을 경우에는 연수비가 조금 감해집니다.

일반연수는 2만 7천원인가 하면은 청주, 청원은 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에서 저희가 계상대로 하더라도 입찰을 보고나면은 약 15%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또 일부연수는 저희가 자체연수를 세웠는데 국고지원이 되는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용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직과를 보더라도 초등교직과에 '96년도 1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연수경비를 세웠었는데 그 집행이 약 10억 9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자격연수가 7개과정, 거기에 약 1,700만원, 국외시찰연수에서 낙찰

차액이 1,800만원, 신규교사 및 복직교사 직전재교육여비 450만원, 기타연수과정에 의해서 900만원정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발생하여, 그래서 총 4,800만원정도의 총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자세한 계획과 실시인원은 짜여있으면 각 과별로다가 취합을 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원재교육관리비 불용액 발생에 대한 답변서 (끝에 실음)

#### ● 조일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해에는 더구나 금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외국어교육이라든가 해서 교원의 재교육비가 부족했다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물며 2억 6천만원이면 백만원씩을 잡아도 260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상당히 그 계수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을 다 검토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감사 끝나시고 유인물로 반드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교원재교육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의 추세입니다. 이렇게 2억 6천만원이나 돈을 못쓰고 남겼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원재교육의 기초계획서부터 시행, 그리고 그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차 학기, 학년부터는 철저히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상교과서대 기관운영경상비, 또 증식지원비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6쪽에 나와있습니다. 26쪽을 좀 보세요.

● 행정과장 이상찬

무상교과서대에 대하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교과서 잔액은 아마 7,40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당시에 제가 공문으로 통보하기를 15%인상으로 해서 교과서 인상율을 통보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집행당시에 교과서대금을 확정시 인상율이 11%로 뚝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고등학교의 건물유지비 불용액이 1억 4천만원이죠. 1억 4천만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초·중학교가 똑같은 현상인가 아니면 공립고등학교만 해당하는 사항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고등학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은 50%는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나머지 50%는 그 학교의

상태나 또는 위험정도, 노후정도에 따라서 사업순위를 메겨서 집중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4천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위급한 상태에 대한 신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96년도 세입자원이 110억이 빠졌기에 자체예산 절감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 속하는 소위 초·중학교 건물유지비는 거의가 잔액이 없습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고등학교의 잔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지역청에 돈이 모자라고 본청에는 돈이 남는다 이거죠. 사실 내가 과장님께, 제가 앞서 말한대로 제가 집행을 해보지도 않고 단순히 서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추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그 관계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갈 소지가 있으니까요.

건물유지비는 건물의 노후도나 건물의 구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이 지침은 아까도 저희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경원에서 각 부처에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려온 겁니다.

지침의 성격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즉, 지침을 위반할 때에는 위법으로 건물유지비도 그 지침에 의하면 어떤 건물, 몇년된 거는 평방미터당 얼마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뀌서 조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시·군은 나름대로 알뜰히 다 썼지만은 저희도는 불요불급한 사항 이외에는 지급을 안했다 그대로 묶어 뒀다 생각을 해주셔야지 본청에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남았고, 시·군에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모자랐다, 이렇게 생각할 순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건물유지비 단가를 위반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래서 서류상으로 접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본청과 집행청에 소위 불이익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쪽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경상비가 23억 6천만원, 그다음에 그 불용액이 유치원, 초·중학교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의 불용액이라고 볼 때 예산편성이나 또는 계획수립 시작서부터 이게 어마어마하게 23억 6천만원, 23억 6천만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말씀 드리지요.

지금 기관운영경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인건비입니다.

● 조일환 위원

인건비.

● 행정과장 이상찬

예, 인건비인데요.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관운영경상비 23억은 연가보상금이나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입니다. 거기에서 23억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는 연가보상금 20일 기준으로 세워라 하면 20일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20일을 다 지급을 안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또 체력단련비라든지 기타는 인건비의 호봉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상위호봉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위호봉으로다가 지급이 되면 잔액이 발생하고, 또 현재 여기에서 남는 인건비와 기타 직접보수를 합하여 남는 인건비를 1개월치 더 편성해야 됩니다.

즉, 12개월 인건비를 편성하지만 최소한도 13개월 인건비는 있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할 때에는 예비비로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금액으로도 다 따져가지고 인건비불용액이 231억 밖에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반달치 봉급밖에 안됩니다. 그럼 인건비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럼 지금 23억 6천은 많은 액수가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그 다음 44쪽에 조금 전에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증식지원비가 잔액이 370만원이 남고 저녁을 2천원짜리로 해보면은 약 1천 8백개가 됩니다. 언론기관에서 돕기운동을 했고 또 김정길위원 같은 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행정질의도 했고 결식아동이 충북교육의 소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비비나 기타 어느 예산을 동원을 해서 결식아동 일소에 좀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것이 남는게 아니라 모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바꿔서 정리해 드리면 앞으로 그 결식아 문제는 저희들이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그러한 사례는 없어지길 바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질문 세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에서 입목죽수량이나 요 수량은 정확히 파악해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기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목죽은 학교나 또는 교육청, 또는 기관에 있는 정원수 같은 것을 입목죽이라 얘기를 하는데 정원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각 기관별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나뭇가지등 울타리나무까지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정원수로서 판매를 했을 때에 그래도 몇만원 이상이라도 가치가 있다하는 것을 재산가치를 따져가지고 입목죽대장에 올려서 이것을 재산에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이것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기수

평가는 저희들이 정원수 평가금액을 5년마다 재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은 예를 들으면 정원수의 모양같은 것에 따라서 틀릴테지만 그 기준은 어느정도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년수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에 기재가 안되어서 제가 여쭙보는 것인데 소위 그 무체재산, 말하자면 채권을 넣어야겠죠.

이 내용을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기수

예, 저희들 재산중에서 무체재산이라고 하

면 재산을 저희들이 현금, 유형재산, 무형재산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무형재산에 속하는데 형체가 없는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하는 권리형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화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 전화기의 전화가입권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기의 보증금을 낸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무체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같으면 전화기 보증금 20만원을 내고 전화를 가지고 왔으면, 전화기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 전화기를 되팔면 보증금 20만원 내고도 나중에 100만원도 되고, 80만원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전화를 신청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무체재산으로 사실 어떤 평가가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전화를 해지하면 그 보증금은 그대로 반납은 받습니다. 그 재산이 무체재산으로 전화기 가입금입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럼 질문 제 네번째로 시설부문에서 다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시설부문에 31쪽을 봐주시면 교동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축소되고 또 예산집행상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해 교육감께서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이 있으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95.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이

월이 되고, 또 재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원에 이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 행정과장 이상찬

'95년도에 국고에서 교동초등학교 강당에 대해서 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5억이 배정되었고 자체로다가 3억 3천만원을 더해서 8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240평규모로 건축을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교동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그 3천여평의 교지에 .....

● 조일환 위원

과장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3억에 대한 앞으로의 용도, 이것은 국가에서 가져온 교부금이니까 반환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우리가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겠느냐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안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5억이상을 집행했을 때에는 국고집행에 먼저 정산하고 지방자치단체비는 그냥 이월한다고 보면 됩니다.



● 조일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5억이상을 집행했어도 5억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오창고등학교 대체농지 조성부담금, 그리고 화장실 개량사업비, 이것이 이월사업비인데 전액이 불용처리 또는 재차 또 이월시킬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오창고등학교 갔을 때 그 부지 때문에 지주가 말썽을 부린다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왜 자꾸만 재차 재이월 시키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기수

그 대체농지 조성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창고등학교는 위원님께서도 현지에 가보셨습니다만 그 학교 들어가는데 옛날에 학교 신축지 부지 옆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가 전부 6,040명인데 그것을 전부 매입을 해서 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해서 정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병택씨 소유의 사유지 173명은 끝까지 저희들 감정가격에 의한 액수에 매도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용할 수도 없고 계속 유보되어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지 전체를 다 사서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붓

고 교지로다 조성했어야지 저희들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납부도 못하고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다시 그 사람하고 재차 합의를 해가지고 지난 6월 12일날 일단의 합의가 이루어져 재산승낙을 받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재산까지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즉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이 그 땅 173평을 뒤늦게 합의에 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 토지를 확인해 보면 소위 그 지구는 도시계획이 시행이 되는 곳입니까, 안되는 곳입니까?

● 재무과장 이기수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은 도시계획이 안됩니다.

● 조일환 위원

안되는 곳입니까?, 그러면 그럴때는 청원군청에 행정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을 학교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소유주가 재차해서 감정가에 응하지 않으니까 법절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 재무과장 이기수

그것은 왜 안되냐 하면 저희들의 학교용지 자체가 기준면적에 전부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되기때문에 그 사유지를 저희들이 학교

시설용지 결정요구를 해도 그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기준에 넘기때문에 되지를 않는다.  
잘 배웠습니다.

● 재무과장 이기수

왜, 그 기준만 가지고 그 옆에 사유지를 꼭 묶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를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하려고 .....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포기를 해야 됩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금년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이기수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

● 조일환 위원

기준에 충족이 되는데 굳이 매입을 .....

● 재무과장 이기수

수용이 안된다고 말씀이죠

● 조일환 위원

아, 글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용인원 거기에 해당하는 법적기준의 면적이 되면 됐지 굳이 그렇게 사유재산을 침해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기수

법적인 기준면적은 최소한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넉넉한 그런 것

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충초등학교 붕괴교실, 그리고 덕성초외 3개 교사 부속건물 철거사업공사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보서는, 그런데 이것이 3년차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이렇게 복잡하고 추진상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 시설과장 박성근

덕성초등학교 교실개축공사는 교실개축이 진행이 되어야만 그 후에 철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개축공사가 '95년 12월 23일 3회추경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월이 됐고, 또 1회추경에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1회추경이 '96년 4월 28일에 1회추경이 됐는데 그때 또 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전체를 합쳐보면 한 공사가 전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썼고 금년도에 썼고 해서 공사는 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월이 된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글썄요. 전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에 시기를 적절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이야깁니까, 공사자체가 나눠서 할 수 없

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예, 그것이 12월 23일라면 우리가 동절기 공사중지 하는 시킨데.

● 조일환 위원

그렇죠.

● 시설과장 박성근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히 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이 될 것이고 내년 3월에 가서 집행이 되는데 4월달에 또 추가가 되어서 사업이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해서 다시한번 이월이 된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 예산은 적기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세우게 되고 .....

● 시설과장 박성근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시설계획이나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제가 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결산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세출예산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가됐죠? 그런정도 아닙니까? 100%정도.

● 재무과장 이기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일환 위원

여기에 기재돼 있는 총 불용액이 그렇게 됐다. 제가 여기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불용액 증가가 100%라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게 큰 요인인가. 중요한 사항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이, '95년도 대비 100%증가되었다는 사항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래요. 예.

● 행정과장 이상찬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 세입결손액을 당초에 판단할때는 160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중에 의도적으로 유보를 해야 만이 160억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지금 '96년도 불용액이 325억 나와있습니다. 325억중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불용액, 세입결손 통보받았던 160억을 뺀다면 아마 100%가 아니라 전년도보다 적을 것입니다.

160억 중에 다행히 112억만 결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억정도는 저희가 챙겨서 세입처리 했고, 그래서 이 이월액 325억 자체는 그 중에서 160억을 감액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용시킨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운영의 묘라고는 이해는 합니다만 어떠한 예산이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급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더 정확성과 열의를 가진다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네, 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죠.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조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수중학교와 송계초등학교가 통합한다는데 그 예산을 한수중학교가 통합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결손이 금년에도 약 110억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국고보조금 결손액은 어떻게 처

리하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결손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 세출예산 사업도 유보하여야 예산의 착오가 없게 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해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미리 예측하여 국고보조 결손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고 불요불급한 재원은 중단하는 등 조치를 했기에 큰 문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수고가 많으셨군요. 다음은 결산서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를 보면 소음측정기구입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예산이 6백만원에서 어떻게 2백 6십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건계장 장관봉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학교앞 도로 같은데서 차량통행으로 소음이 나는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

● 김광수 위원

그럼 소음을 방지하는 기계입니까?

● 학교보건계장 장관봉

아닙니다. 소음을 방지하는 기계가 아니라 소음을 측정하여 학교앞 도로의 소음이 큰 곳에 소음방지벽을 설치하게끔, 그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왜냐면 소음을 정확히 측정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도로공사 같은데다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일제 소음기를 사려고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려고 조달청에 구입신청을 했으나 이미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살 수가 없어 제품을 변경하여 영국제를 다시 구입하게 되었는데 영국제는 가격이 조금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윤

예, 조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회의 진행에 있어 제가 짊고 넘어갈게 있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청의 관계관은 답변을 할 때 꼭 관동성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성명이 없이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고 답변시는 꼭 관동성명을 먼저하고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참고하시어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윤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들으셨으니 관계관계서는 답변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사학지원비에 민간자본이 전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 사립학교는 민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시설비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합니다.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같이 시설비가 지원되는데 이 시설비는 자본적인 성격이라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과목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교단선진화 영상음향기기 사업비의 예산이 330만원인데 이중에서 130만원이 이월된 것은 왜 그렇고 330만원중 130만원씩이나 이월을 시켰다는게 조금 의문이 가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것은 작년도 12월에 2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비한 예산인데 시기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금년에 또다시 사고이월하는

[제78회-제2차 예·결산소위원회]

<p>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p> <p>● 위원장 이경윤</p> <p>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시죠?</p>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침과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p> <p>(15시 10분 산회)</p>
<p>0 출석위원 : 5명</p> <p>위원장 이경윤, 간사 김광수, 위원 김정길, 조일환, 안병일.</p> <p>0 출석공무원 : 12명</p> <p>관리국장 신재철,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중등교직과 인사담당장학관 이규태, 중등교직과 학사계장 황용수, 행정과 예산계장 신건환, 재무과 경리계장 연희지, 재무과 세입계장 임진섭, 사체과 학교보건계장 장관봉.</p> <p>0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 : 본회의 회의록 별책2</p> <p>0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본회의 회의록 별책4</p> <p>0 답변서 : (별첨2)</p> <p>0 교원재교육 관리비 불응액 발생에 대한 답변서 : (별첨3)</p>	

#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8월 14일 (목요일) 11시 01분

## 議事日程 (제7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附議된 案件

-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01분 개회)

###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 ● 위원장 이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들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청에서는 질문내용을 잘 검토해서 '97년도부터는 어떤 모순됨이 없이 계획을 세워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결산전반에 대한 세부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결산 승인의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가 있으

[제78회-제3차 예·결산소위원회]

<p>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교육감          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          다.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          고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신</p>	<p>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소위원회 활동          을 모두 마침과 아울러 제3차 예산·결산소          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11시 06분 산회)</p></p>
---	--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경윤, 간사 김광수, 위원 김정길, 조일환, 안병일.

**0 출석공무원 : 2명**

재무과 경리계장 연희지, 재무과 세입계장 임진섭.



(별첨 1)

## 豫算決算小委員會 議事日程(案)

### 第7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997. 8. 12(火) 14 : 00 ~	1. 開會 2. 委員長 選任의 件 3. 幹事 選任의 件 4. 議事日程(案) 議決 5. 散會	第1次小委員會
1997. 8. 13(水) 11 : 00 ~	1. 開會 2. 1996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歲入 歲出決算 承認의 件 審査 3. 散會	第2次小委員會
1997. 8. 14(木) 14 : 00 ~	1. 開會 2. 1996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歲入 歲出決算 承認의 件 審査(議決, 審査報 告書 作成) 3. 散會	第3次小委員會



(별첨 2)

## 답 변 서

질문위원	김 정 길 위 원		
답 변 자	재 무 과 장	관련부서	재 무 과

### 질문요지

○ '96.결산서 일반현황 6쪽 기타(3교)의 35,298천원의 세입내역은?

### 답변요지

○ 기타(3교)의 세입금 35,298천원은 청주고부설방통고, 청주여고부설방통고, 충주고부설방통고의 세입금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목 학교명	입 학 금	수 업 료	입학수험료	재증명수수료	기타예금이자	합 계
청주고부설 방통고	566	11,842	392	164	1	12,965
청주여고 부설방통고	509	11,154	403	82	1	12,149
충주고부설 방통고	475	9,262	395	49	3	10,184
합 계	1,550	32,258	1,190	295	5	35,298





(별첨3)

## 교원재교육관리비 불용액 발생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부 의 장		
답 변 자	초등교직과장	관련부서	초등교직과의 6개부서

### 질문요지

교원재교육관리비 불용액이 2억 6천만원에 이르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 답변요지

교원재교육관리비는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단재교육원 등 7개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불용액 사유는 불임과 같습니다.

불 임 : 교원재교육관리비 불용액 현황 1부. 끝.

## □ 불용액 답변요지

- 교원연수 과정별 세부인원 결정전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게 되므로 예산편성안 제출시는 전년도를 기준하여 좀더 상회하는선으로 인원수 및 금액을 편성되고 있음.  
(연수과정별로 예산부족은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받음)
  - 예산편성안 제출 : 전년도 8월말
  - 교육부연수지침 : 전년도 11월
  - 연수과정인원수 결정 : 해당년도 1월중
  
- 일부 연수과정은(타기관 차출연수 또는 교장자격연수 등)연수인원을 자체에서 결정하지 못하므로 최종연수 결정되는 인원이 예산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가 있음.
  
- 단제교육원, 교육대학, 교원대학에서 받는 연수과정중 여비단가가 낮은 관내지역(청주, 청원)소재 교사의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경우 여비가 절감됨
  
- 해외시찰연수는 입찰에 의해 집행하므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상당액이 절감되고 있음

# 교원제 교육관리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기관 또는 과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액 사유	비고
초등장학과	15,400	15,306	94	킴부 1	
초등교과과	1,134,280	1,088,450	45,830	킴부 2	
중등장학과	111,860	88,185	23,675	킴부 4	
중등교과과	1,070,812	961,123	109,689	킴부 3	
과학기술과	483,898	452,089	31,809	킴부 5	
사회교육체육과	72,690	72,670	20	킴부 6	
단체교육인	366,308	315,757	50,551	킴부 7	
계	3,255,218	2,993,580	261,668		

# 결산 질의답변 자료 작성

과 명 : 초등징화과

( 단위 : 천원 )

목	별	시	입	명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분	용	액	시	유
형)교원계교육권리												
권)권서운영비					150	150	0					
				· 국민학교교사국악연수	8,750	8,656	94					
				· 유아교육담당교원연수	1,100	1,100	0					
목)수	당			· 국민학교교사 국악연수	5,400	5,400	0					
목)어	비			· 국민학교교사 국악연수								
					15,400	15,306	94					
				계								



# 교원제 교육관리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초등교직과

목 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액 사유	비고
관시운영비	자격연수 (교장·교감·원장·원감·특1,2정)	39,800	23,777	16,023	자격연수자의 감소에 따른 본청 부담액 감소	
	교과진담교사연수경비	16,320	16,300	20	집행잔액	
	교육행정지도자과정연수	2,400	2,400	0		
	특수분야 일반연수	4,080	4,080	0		
	교원전문과정	5,000	5,000	0		
소 계		67,600	51,557	16,043		
여 비	자격연수	172,060	162,468	9,592	자격연수인원의 감소 관내(청주·청원)지역에 대상자가 많아 불용액 발생	
	초등교원 국외시찰	361,400	342,724	18,676	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	
	교과진담교사	21,900	21,700	200	집행잔액	
	특수분야 일반연수	9,000	9,000	0		
	초등영어연수	350,820	349,501	1,319	연수자의 관내(청주·청원)지역에 대상자가 많아 불용액 발생	
소 계		1,066,680	1,036,893	29,787		
합 계		1,134,280	1,088,450	45,830		

# 결산 질의 · 답변 자료

중등징회과

(단위: 천원)

목	사	업	명	에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사	유	비고
관서운영비	독. 불연수			200		186			14						
이	영이교사	치코연수		94,860		76,440			18,420						항공료와 현지 연수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 · 집행한 간액임 (연수경비는 치코대학과의 계약집행)
	독. 불연수			15,000		9,784			5,216						독일 · 프랑스 정부에서 각 5명씩 초청받아 현지인수 계획이 없으나 프랑스 정부에서 3명 초청으로 2명 감소 및 항공요를 절약 · 집행한 간액임. (체제비및 교육비는 독일. 프랑스정부 부담)
임무추진비	영이교사	치코연수		1,800		1,775			25						집행간액
	계			111,860		88,185			23,675						

권) 교육사업비. 항) 제교육비. 세형) 교원계교육관리. 세세항) 투자교육사업비

# '96 결산 질의 답변 자료 작성

(단위 : 천원)

중등교과제

분류	사업명	예산액	기행액	불용액	불용액 사유
이비	교육행정지도자과정	2,640	2,574	66	
	교원전문과정	3,000	2,208	792	충북 배정 인원 감소 (교원배인수위)
	인어민회용인수	2,805	3,986	△1,181	
	성교육/성상담인수	600	980	△380	
	교시현장실무인수	600	340	260	충북 배정 인원 감소 (한국교총)
	교장자격인수	10,200	2,760	7,440	중등교정 수급에 의한 인원 감소
	교과별 자격인수	89,232	79,583	9,649	1.2점 지적인수대상자 미 신청
	소계	109,077	92,431	16,646	
	교원전문과정	11,340	3,342	7,998	연수인원 감소와 관내지의(청주)에서 지명됨에 따라 예비 지급단기 감소
	장학시양성과정	5,040	2,160	2,880	인수기간 단축(8주→4주)
교육행정지도자과정	5,940	5,940	0		
국약인수	3,000	2,640	360	충북 배정 인원 감소	
교과, 주임, 교과별 일반인수	123,545	132,346	△8,801		

(단위 : 천원)

중등교과과

구분	명칭	예산액	집행액	발용액	분용액	시유
이	인극지도교사인수	1,200	780	420		충북 배정인원 감소
	신규임용진인수	43,200	19,624	23,576		교원수급에 의한 인원 감소와 일부 채용과목 응시인원 없음
	교시현장실무인수	3,000	1,320	1,680		충북 배정 인원 감소
	성교육/성상담인수	3,000	3,300	△300		
	박치진인수	5,400	2,629	2,771		인수인원 감소
	무용지도교사인수	1,200	780	420		충북 배정 인원 감소
	교정자격인수 (도내)	23,625	5,514	18,111		교원수급에 의한 인원 감소와 관내지의 데상지가 많이 예비지급단기 감소
	교감자격인수 (도내)	23,625	21,702	1,923		
	교감·교감 자격인수 (관내-교장5, 교감5)	3,500	0	3,500		교감·교감 이수대상자가 도내지역 (청주, 청원외)에서 지명
	1경 자격인수	385,000	348,727	36,273		인수인원 감소와 관내지역의 (청주, 청원)에서 지명됨에 예비 지급단기 감소
	국외시찰인수	320,120	317,888	2,232		
	소 계	961,735	868,692	93,043		
	합	계	1,070,812	961,123	109,689	



# 결산 질의답변 자료 작성

(단위 : 천원)

과학기술과

목. 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액 사유	비고
수	초등학교저학년과실험인수	30,150	30,268	182	인수기관의 요구금액 감액에 따른 불용액	
	중·고 과학 실험인수	4,790	4,632	158	"	
	컴퓨터 이수	41,580	41,310	270	"	
	공과교사 실기인수	3,600	1,082	2,518	"	
	상과교사 인수의 1과정	4,020	4,020	0		
소		87,440	84,312	3,128		
원시운영비	초등교사차인과실험인수	9,600	9,573	27	인수인원 감에 따른 불용액	
	컴퓨터 이수	23,080	21,512	1,538	인수교재 구입에시의 예산 삭감 불용액	
	공과교사부진공제기인수	4,800	4,200	600	인수인원 감에 따른 불용액	
	복수시선탐당자인수	3,000	1,800	1,200	교육부의 인수대상 인원 감원에 따른 불용액	
	상과교사 인수의 4과정	8,000	8,000	2,518		
소		48,480	45,115	3,365		
이	초등학교과과회실험인수	64,590	59,724	4,866	인수인원 감 및 인수대상자의 연수지역(권내·권외)에 따른 불용액	
	컴퓨터인수	188,184	177,134	11,050	인수대상자의 연수지역(권내·권외)에 따른 불용액	
	공과교사진공인수	7,920	5,880	2,040	"	
	특수시선탐당자인수	3,000	2,340	660	교육부의 인수대상자 감원에 따른 불용액	
	치관기자재운용인수	3,600	0	3,600	추관 기관인 교육부에서 인수를 취소함에 따른 불용액	
	공과교사실기인수	8,250	7,790	460	인수대상자의 연수지역(권내·권외)에 따른 불용액	
	공과부진공제기인수	12,900	10,320	2,580	교육부의 인수대상자 감원에 따른 불용액	
중·고과회실험인수의 3과정	59,474	59,474	2,518			
소		347,978	322,662	25,316		
합		483,898	452,089	31,809		

# 결산절의담빈자료

사회교육체육과

(단위 : 천원)

목 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액 사유	비고
판서운영비	학교보건 일반연수	6,800	6,800	0		
여 비	1급 양호교사 자격연수	54,090	51,240	△150		
	학교보건 일반연수	11,800	11,630	170	관내 인원과 관외 인원 예상 차이	
	소 계	72,690	72,670	20		

# 결산잔액의담변자료

기관 : 충청북도단체교육원

(단위:명,천원)

목 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액 사유	비 고
비정규직 보 수	교원 연 수	9,177	8,759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 잔액</li> <li>· 연수교제 발간비 및 권당 단가 절감 : 1,286천원</li> <li>· 합동강의 시수 운영 및 본원 직원(연구사) 강의시는 강시수당 미지급 → 세세목 " 운영수당" 집행잔액 8,630천원</li> <li>· 회화 시간 분임편성시 분임실 부족으로 10분임 축소 운영</li> </ul>	
	수 계	9,177	8,759	418		
관시운영비	초등영어담당 교사일반연수	82,341	71,590	10,7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교제비 절감 및 초등영어교과서가 익년도 3월에 발행되어 구입하지 못해 시중 교재 이용으로 5,791천원 절감과 원고료 집행잔액 : 2,509천원</li> <li>· 합동강의 시수로 인한 강시수당 지급잔액 : 5,518천원</li> </ul>	
	초등영어담당 교사심화연수	80,928	75,035	14,893		

# 결산잔액의 답변자료

기관 : 충청북도단체교육원

(단위:명,천원)

목 별	사 업 명	에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불 용 액 사 유	비 고
	중등일반인수 (국.수.사회.체 육.음악.영어)	28,648	27,273	1,375	· 동 기간에 6개과목 일반인수가 진행됨으로 합동강의 시수로 인한 강사수당 절감 : 3,740천원	
	유치원초.중등 신규 임용진 교 육	17,980	11,784	6,196	· 3개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합동강의 시수 로 인한 강사수당 절감액 : 14,120천원  · 인수교재비 및 원고료 절감액 : 2,076천원	
	초·중등교감 자격 연 수	24,326	21,397	2,929	· 합동강의 시수로 강사수당 절감 : 4,120천원	
	초등특활영어 연수의 9개 과 정	90,805	87,025	3,780	· 10개과정 ⇒세세목 “일반수용비” 및 “운영 수당” 집행 잔액	
	소 계	334,028	294,104	39,924		



# 결산질의 답변자료

기관 : 충청북도단체교육원

(단위:명,천원)

목 별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불 용 액 사 유	비 고
어 비	교 원 연 수	1,543	1,540	3		
	소 계	1,543	1,540	3	· 집행 잔액	
임무추진비	교 원 연 수	4,300	3,814	486		
	소 계	4,300	3,814	486	· 집행 잔액	
보 상 금		17,260	7,540	9,720	· 초등영어 담당교사 일반연수시 원어민 강사 김사 체제비 미지급액 : 8,040천원	
	소 계	17,260	7,540	9,720	· 초등영어 심화과정 연수시 원어민 강사 왕복 교통비 미지급액 (주성초등에서 연수진행) : 1,000천원	
	합 계	366,308	315,757	50,551	· 기타 타 과정 집행잔액 : 680천원	

